

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 범 윤 의원 외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9년 4월 15일
- 회부일자 : 2009년 4월 16일

3. 제안이유

- 자연학습원 이용과 관련하여 현실에 맞는 “시설사용료 및 연수비”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자연학습원 운영의 내실화와 이용수준을 향상하고, 『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』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시설사용료 및 연수비 현실화(안 제10조의 별표)

○ 숙박비 및 연수비 (단위 : 1인당/원)

구 분	개정 전			개정 후				비 고
	숙박비	연수비	계	숙박비	연수비	계	인상율	
초등학생	4,700	8,400	13,100	4,700	9,900	14,600	11.5%	식대는 별도징수
중 학 생	5,000	8,500	13,500	5,000	10,000	15,000	11.1%	
고·대학생	5,300	8,600	13,900	5,300	10,100	15,400	10.8%	
일 반 인	8,000	9,000	17,000	8,000	10,500	18,500	8.8%	

※ 숙박비는 변동 없음.

나. 『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』에 따른 용어정비

5. 검토의견

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학생(초·중·고·대학)과 일반인의 연수비 현실화와 일반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『알기쉬운 법령 만들기』를 위한 정비기준』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붙임 :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